

마약류제조업자의 제조 보고서

보고자 정보	① 업소명	
	②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	
원료정보	③ 제품명	④ 품목코드
	⑤ 제조번호	⑥ 유효기한
	⑦ 최소유통단위	
	⑧ 수량	⑨ 재고량
제조구분	⑩ 위·수탁 구분	
제품정보	⑪ 제품명	⑫ 품목코드
	⑬ 제조번호	⑭ 유효기한
	⑮ 최소유통단위	
제조정보	⑯ 제조 시작일자	⑰ 제조 종료일자
	⑱ 수율	
	⑲ 제조단가(원)	⑳ 제조가격(원)
제조량	㉑ 수량	㉒ 일련번호
	㉓ 전자태그(RFID tag) 코드	
재고량	㉔ 수량	㉕ 일련번호
	㉖ 전자태그(RFID tag) 코드	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취급사항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작성방법
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업체 관련 정보(허가·승인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요양기관기호, 소재지 등)에 따라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적습니다.
⑩ 마약류제조업자가 위·수탁 제조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, 위·수탁자의 업무범위를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. [자사제조, 위탁제조(위탁사 보고 시), 수탁제조(수탁자 보고 시)]
⑦·⑮ 최소유통단위는 유통되는 최소한의 포장단위로 의약품 포장 내 들어간 날개의약품의 총 수량과 규격단위를 적습니다.
⑫ 의료용 완제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적습니다. 다만, 마약류 원료 등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품목코드를 적습니다.
㉑·㉔ 최소유통단위(포장규격)별 수량을 적습니다.
㉒·㉓·㉕·㉖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제1호의 수출품목 및 같은 항 제2호·제3호에 해당하는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련번호, 전자태그(RFID tag)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